

안전기준 준수 제도 소개



1. 안전관리 법 제도 일반

- 정부는 '67년 「공산품 품질관리법」, '74년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를 시행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11.2월에는 「제품안전기본법」을 제정·시행하여 국내에서 제조·수입·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의 수거 등 조치 및 그 이행점검 등 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 한편, '15.6월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서 어린이제품 규정을 별도 분리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을 제정하여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 사항을 정비하였고, '17.1월에는 유사성이 높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통합·제정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2. 제품의 안전관리

1) 제품출시 前(사전 시험·인증 의무 부여)

- 제품의 위해 정도에 따라 ①안전인증, ②안전확인, ③공급자적합성확인, ④안전기준 준수 생활용품 등 4가지로 안전관리 품목을 구분하고 있으며, 국내 제조·수입업자가 ①안전인증, ②안전확인, ③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을 국내에서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품 출시전에 반드시 시험·인증을 받아야 하고, 해당 제품에는 KC마크 부착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④안전기준 준수 생활용품은 사전 시험·인증대상에서 제외(KC마크 표시불가)하고 있습니다.

〈품목 구분 및 사전 시험·인증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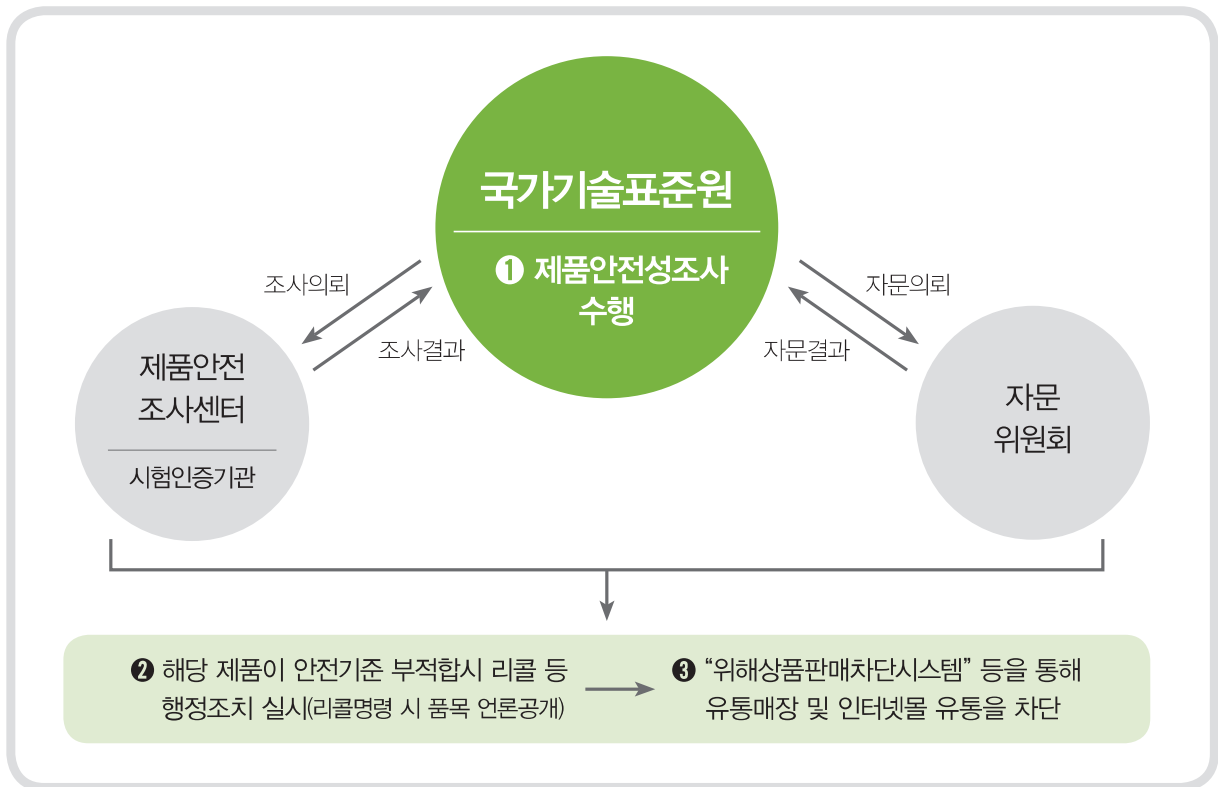
구분	인증 등 준수절차	위해 정도
①안전인증 (46품목)	제조·수입업자 → 신청 → 안전인증기관 (공장 심사, 제품 검사) → 인증서 발급 (인증번호) → KC마크 (인증번호) → 제품 판매	높음
②안전확인 (107품목)	제조·수입업자 → 신청 → 시험검사기관 (제품 검사) / 안전인증기관 (신고서류 검토)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번호) → KC마크 (신고번호) → 제품 판매	중간
③공급자적합성 (102품목)	제조·수입업자 → 자체 또는 제3자 시험기관 (제품 검사) → KC마크 → 제품 판매	낮음
④안전기준준수 (24품목)	제조·수입업자 → 자율시험 (제품 검사) → 제품 판매	낮음

※ 법적 근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제15조, 제23조, 제28조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17조, 제22조, 제25조)

2) 제품출시 後(법적 안전기준 준수 의무 부여)

- 국내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을 시중에 출시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준수하면서 제품을 유통할 의무가 있으며, 정부(국가기술표준원)는 시중에 유통중인 전기용품, 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연중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법상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정부는 안전성조사에서 적발된 제품의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품 수거등(이하 ‘리콜’)의 명령/권고 조치를 통해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표시사항 위반 등의 경미한 위반내용은 개선조치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조사 및 후속조치 절차〉



※ 안전성조사 및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 :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내지제11조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6조, 제9조, 제10조

3) 처벌 규정(정부의 행정처분 불이행시 등)

- 정부는 위해성이 확인되어 적발된 해당 사업자에게 리콜명령/권고 또는 개선조치 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별로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3. 안전기준 준수 제도(24개 생활용품)

1) 안전기준 준수 제도의 도입

- '18.7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공급자 적합성 확인 품목'으로 분류된 생활용품 중에서 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낮은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 장신구 등의 품목을 별도 분리하여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하는 '안전기준 준수 제도'를 도입 하였습니다.(전안법 제28조 내지 제31조)

※ '22.5.28부로 '감열지'가 신규 안전기준 준수 대상으로 포함

※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24개 품목)

분류	품목
화학	1. 가죽제품 2. 합성수지제품
생활	3.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은 제외) 4. 간이 빨래걸이 5. 선글라스 6. 안경테 7. 텐트 8. 고령자용 신발 9. 고령자용 지팡이 10.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11. 고령자용 목욕의자 12. 고령자 위치추적기 13. 물안경 14. 반사 안전조끼 15. 스테인레스 수세미 16. 시각장애이용 지팡이 17. 침대 매트리스 18. 우산 및 양산 19. 휴대용 경보기 20. 접촉성 금속 장신구 21. 벽지 및 종이장판지(인테리어 필름 포함) 22. 감열지 ('22.5.28. 시행)
섬유	23. 가정용 섬유제품 24. 양탄자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된 24개 품목은 정부가 정한 법상 안전기준에 적합한 한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사전 시험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KC마크는 표시불가)
- 다만,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유해물질 허용치, 성능기준 등 법상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표시사항을 누락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품의 시중 유통이 가능합니다.

안전기준 준수 제도(요약)

-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으로서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 시험 없이 제조·수입·판매를 허용(KC마크 표시불가)

* 단, 유해물질 허용치 충족 등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표시사항을 누락하지 말아야 함

2) 안전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안전기준 준수대상 24개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 시험인증 의무는 면제되었다고 하나, 제조 및 수입업자는 제품을 직접 시험하지 않고도 ①원자재(염료, 방수가공제 등)에 포함된 유해물질 확인 및 관리, ②안전성이 확인된 원자재 사용, ③민간 시험기관에서 자율인증 획득, ④해외에서 받은 제품의 인증을 확인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안전성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을 포함하여 「전안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모든 품목별 안전기준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고 있으며,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품목별 안전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전기준 열람 방법: 국가기술표준원홈페이지(www.kats.go.kr) → 정책 → 제품안전 → 안전기준 열람 → 품목별 안전기준 다운로드

- 한편, 정부(국가기술표준원)는 ①안전인증, ②안전확인, ③공급자 적합성 확인 등의 제품과 동일하게,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도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가 법상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시중에 유통·판매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연중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정부의 안전성 조사과정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적발될 경우에는 「전안법」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리콜명령/권고, 개선조치 권고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처벌 규정

-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24개) 사업자의 경우도, 정부의 행정처분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제품안전기본법〉

처벌내용	처벌기준	관련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리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1호
	리콜 조치후에도 해당 제품을 유통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1의3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리콜 이행점검에 대한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26조제3항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리콜명령/권고 조치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1호
	수거 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4의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처벌내용	처벌기준	관련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판매중지 등(개선·파기·수거·판매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49조제1항제34호
	판매중지 등으로는 위해 방지가 어렵다고 인정되어 판매중지 등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교환·환불·수리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안전기준에서 정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18호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한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19호

안전기준 확인 방법

- II. 품목별 안전요건 및 표시사항은 해당 품목에 대한 최소한의 사항만 정리한 것으로, 시험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에서 안전기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표원 → 정책 → 제품안전 → 안전기준열람 → 생활용품 안전기준 검색(안전기준 준수)